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0137 판결 [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01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5580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태영건설

피고, 항소인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8. 9. 20.

판결 선고 2018. 10.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5580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4,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525,853,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과"를 "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1)

재판장판사서경환

판사김제욱

판사이정훈

1) 피고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본안 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본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별도로 그 신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